

建築物着工統計調査 施行規則

◎건설부령제161호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5년 9월 23일

건설부장관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중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이하 “착공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② “주택”이라 함은 독채로 된 살림집, 아파트 등 완전히 구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한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조된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1개 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착공”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사대상) 착공조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조사의 구분) ① 착공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건축물착공 통계조사
2. 주택착공 통계조사
3. 보정조사

② 건축물 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③ 주택착공통계조사는 건축물중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④ 보정조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5조(조사기간) ① 착공조사는 그 달에 착공신고된 건축물에 대하여 월단위로 실시한다.

제6조(착공신고) ①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

를 착공한 후 7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축물 착공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할 수 있다.

1. 건축허가대상건축물; 당해 건축허가기관
2. 건축법 제5조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 당해신고서 접수기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건축물: 읍·면장

② 건축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 2부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에 갈음한다.

제7조(조사사항) 착공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건축물 착공통계조사

- 가. 건축주
- 나. 건축위치
- 다. 지역·지구
- 라. 건축물 용도
- 마. 대지면적·건축면적·연면적
- 바. 층 수
- 사. 건축물 구조
- 아. 공사종별
- 자. 공사기간
- 차. 공사비 예정액
- 카. 허가유무

2. 주택착공통계조사

- 가. 주택의 종류
- 나. 주택의 형태
- 다. 규모
- 라. 주택의 호수
- 마. 주택의 이용구분
- 바. 공사자금 조달방법

3. 보정조사

- 가. 보정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건축물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사항. 이 경우에 “공사비예정액”을 “공사실시액”으로 한다.

- 나.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8조(조사방법) ①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착공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의 구청장을 제외한다)은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 6조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착공신고서를 접수한 육·면장은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착공신고서와 건축주가 제출한 착공신고서를 확인한 후 별지 제 2호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 9조 (신고서의 제출) ①시장·군수·구청장(서울특별시 및 부산시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 8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1부와 별지 제 3호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 총괄표를 다음달 10일까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송부한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서 총괄표와 시·도별 착공신고서 총괄표를 억월 15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10조 (보정조사) ①보정조사는 착공조사결과의 보완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연 1회 건설부장관이 임명한 조사원이 현지를 확인 조사한다.
②건축주·건축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조사원의 질문에 정확히 응답하여야 한다.

③보정조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계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원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1조 (착공신고서 용지의 교부)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접수기관의 장은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착공신고서 용지를 무상으로 배부하여야 한다.

제 12조 (착공신고서 용지의 청구 및 배부) ① 도지사는 이년도에 필요한 착공신고서 용지를 시·구·군별로 구분 산정하여 매년 9월 30일 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청구받은 착공신고서용지를 매년 10월 31일 까지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착공신고서 용지를 매년 11월 30일 까지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접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13조 (신고서 및 결과표의 보존) 건설부장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착공신고서와 총괄표를 1년간 보존하고 착공통계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에너지 소비 절약 표어

에너지 is 国力이다. 아껴써서 愛國하자.
기름으로 만든 전기. 한등꺼서 애국하자.

쓰고나면 再生없다. 에너지를 節約하자.

에너지를 아껴써서 외화지출 막아내자.
너도나도 걷기운동, 절약되고 건강준다.

訂 正

지난 9月号 P.63 서울市 綜合廳舍 建立計劃設計 出品作品中 準優秀作 〈高麗大學校建築設計室 제공〉의 入賞者 姓名을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金哲性을 金哲性으로
李炳鎬를 李鍾鎬로
誤植되었기 订正합니다.